



# 5 · 칠레 FTA 체결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FTA와 WTO

지난 2월 16일, 우리나라와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FTA란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무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다자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주의 무역체제이다.

FTA는 WTO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s: EU)처럼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처럼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이제 FTA는 WTO/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과 함께 개방화의 양축을 구성하여 진행될 것이다.



허 덕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협상타결까지의 과정

한국과 칠레가 FTA를 추진키로 결정한 시기는 1998년 11월로 비교적 오래되었다.

당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1999년 12월부터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한국과 칠레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02년 10월 24일로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칠레와의 FTA협상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측에서도 칠레를 첫 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정함에 대해 농업계가 심하게 반대했고, 칠레측에서도 중소기업체의 반발이 컸다. 제4차 협상(2000년 12월 12일) 이후 1년 반 이상 협상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도 칠레의 금융시장 개방문제로 또다시 진통을 겪었다.

협상이 타결되고 2004년 2월 16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농민집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쌓여왔던 농업인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을 자동차나 IT기술산업의 수출을 위한 반대급부로 내주었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119조원 농업지원대책 외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치는 못했다.

### 3. 한·칠레간 FTA 체결의 주요 내용

한·칠레 FTA 협상 내용 중 민감한 품목인 사과와 배 그리고 쌀의 21개 세부품목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을 관세 철폐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점진적 철폐와 일부 극히 민감한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칠레도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대부분(94.5%)의 품목은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할당량(Tariff Rate Quota: TRQ) 제공과 DDA 이후 재협상, 16년 내 관세철폐, 계절관세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칠레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계절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포도 1개 품목이며, 10년간 11월에서 4월까지만 관세를 철폐한다. TRQ품목에는 축산물 중 쇠고기와 닭고기, 유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400톤, 2,000톤, 1,000톤의 할당량(Quota)이 정해졌다. 양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직접적인 과금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축산물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다. DDA협상 이후 논의키



로 한 품목 중 축산물은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계란, 난황, 꿀, 치즈(신선, 커드 등), 밀크, 크림, 녹용 등이다. 16년 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한 축산물은 조제분유가 있으며, 7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에는 칠면조 고기(TRQ 600톤 제공)가 포함되어 있다.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에는 말, 양, 닭, 칠면조, 기타 동물, 식용 설육, 알, 로얄제리, 꿀, 발굽, 사향 등이 있다. 중우, 중돈, 중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호밀 등 2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와 함께 곧바로 관세가 철폐된다.

#### 4. 칠레의 축산업 현황

칠레는 한반도의 3.7배 정도의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1/3 정도인 1,545만명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2001년 기준으로 교역규모는 수출 174억 달러, 수입 159억 달러 정도이며, 국민소득도 5,000불 이하로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 크게 낮다. 199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다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1998년 잠시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칠레의 농림업 비중은 5.6%에 불과하지만, 나라의 모양새가 길어 남부는 과실재배에 적당하고 연 강우량이 120~1,200mm의 지중해성 기후인 주요한 농업 및 목축지대가 있다. 여기에서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등 광산물을 다음으로 농축임수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칠레의 축산업은 낙농업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규모로 여기저기에서 젖소를 기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80~90년대 상황과 흡사하다.

반면에, 돼지와 닭은 일반 농가에서 거의 사육되고 있지 않고, 주로 대기업들이 사육한다. 돼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사육두수는 대략 250만두 정도 사육되고 있어 우리나라 양돈 규모의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3대기업이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구조로 직접 또는 계약사육을 통해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칠레의 3대 양돈기업이란 아그로수퍼그룹(Agro Super Group)의 수퍼 세라도(Super Cerado), 프리오사(Friosa), 바자도르(Vayador) 3사이다. 그중 수퍼 세라도가 가장 커서 모든 8만두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프리오사와 바자도르가 각각 모든 1만

두 내외를 사육하고 있다. 아그로 수퍼 그룹은 연간 60만톤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과 1일 6,4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과 함께 종돈장, 육가공공장, 수출입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돼지고기 수직 계열화업체로, 효율적인 돼지고기 생산과 수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만일 수출목표량이 늘어날 경우 언제든지 신속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도 우리보다 앞서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 5. 칠레산 축산물 수입이 국내 축산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칠레의 축산물 생산비는 그리 낮지 않다. 돼지고기를 예로 들어보면, 지육기준으로 이웃 아르헨티나가 한화 환산으로 kg당 578원, 브라질이 603원 정도인데 비해, 칠레는 775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도 칠레산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단가가 냉동 삼겹살 기준으로 kg당 2.56~2.98달러 정도 되어, 미국산보다 다소 높다. DDA협상결과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돼지고기 관세가 1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관세화 된다 하더라도 대략 2달러 이상에서 수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만톤 정도의 삼겹살과 목살 등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칠레산 돼지고기 가격이 다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양의 극히 일부 정도가 대체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나 닭고기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축산업 규모가 적어 칠레의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육류의 소비 패턴이 냉장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송기간(45일)을 감안하면 칠레산 냉장육의 수입 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 닭고기의 경우, TRQ물량이 소량이어서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물량 내에서 수입선 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장의 경우 국내 생산실적은 거의 없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분유는 TRQ 제공 없이 DDA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하여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쇠고기 수입관세는 40% 정도이며, DDA협상에서 쇠고기 수입관세가 얼마로 인하되게 될 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략 20%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 의한 무관세와 WTO/DDA에 의한 관세의 차이 20% 정도가 있어, 이 차이에 대한 수입량 확대효과가 예상된다. 칠레는 쇠고기분야에서 미국, 호주 등 경쟁국에 맞먹는 수준의 낮은 수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품질면에서 다소 떨어져 당분간 큰 수입의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칠레가 위생문제와 품질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수출할 것을 결정한다면,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칠레가 품질문제와 물량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칠레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수년 내 국내 시장의 32%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곧바로 관세가 철폐되는 사료곡물 분야에 대한 파급영향은 단미사료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도입 대상국이 대체된다 하더라도 국제가격이나 국내 축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단미 사료 원료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양이 칠레산으로 대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6. 맺음말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것은 칠레가 처음이다. 비록, 칠레와의 FTA체결로 인해 과수산업을 제외하고 축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칠레와의 FTA 체결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앞으로 일본, 중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 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 질 것이며, 그 상대가 중국이나 미국, 캐나다라면 파괴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입 시장에서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이 낮다면, 우리 축산업은 하루라도 빨리 차별화에 성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별화에도 한계가 있다. 차별화에 의한 가격 차이가 5배 10배까지는 허용되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화의 한계는 비용 절감으로 보충하는 방법 밖에 없다. 품질차별화와 비용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가격경쟁력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이 높다는 조건을 갖춘 축산물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는 시대이다. ⑤